
호치민 한인회 정관 (定款)

- ✓ 2006. 09. 21. 제정 승인
- ✓ 2006. 12. 22. 제정 확정
- ✓ 2007. 01. 25. 개정
- ✓ 2007. 07. 10. 개정
- ✓ 2007. 12. 05. 개정
- ✓ 2008. 03. 07. 개정
- ✓ 2008. 05. 23. 개정
- ✓ 2009. 08. 25. 개정
- ✓ 2012. 02. 13. 개정
- ✓ 2014. 03. 28. 개정
- ✓ 2021. 03. 17. 개정
- ✓ 2023. 02. 15. 개정

호치민 한인회 정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명칭)

1. 본회의 명칭은 “호치민 한인회”라 칭한다.
2. 본회의 영문 명칭은 “KOREAN ASSOCIATION IN HO CHI MINH CITY”로 한다.

제 2 조 (목적)

호치민 한인회(이하 본회라 한다) 정관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 집행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정하여 이를 준수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 3 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실은 호치민시에 위치한다. 단 사무실의 위치를 본 조와 다르게 하고자 하는 경우 이는 총회의 결의를 필요로 한다.

제 4 조 (업무)

1. 본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호치민에 거주하는 한인 상호간의 친목과 번영을 도모하고 한-베 친선과 문화교류를 증진하며 나아가 양국의 상호발전에 기여하는 활동을 주 업무로 한다.
2. 호치민 한인사회가 현지사회에서 통합된 한-베 단체가 될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지위의 안정과 향상에 기여한다.
3. 호치민 한인사회의 미래 세대들을 위한 교육과 한국인의 정체성 확립에 노력한다.
4. 기타 본회의 총회에서 의결된 활동을 한다.

제 2 장 회원

제 5 조 (회원의 구성)

1. 회원은 일반회원, 정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나눈다.
가. 일반회원은 베트남 호치민 인근에 거주하는 한인을 말한다.

- 나. 정회원 (이하, 회원이라 한다)은 일반회원 가운데 정상적인 회원가입절차를 준수한 한인을 말한다.
 - 다. 특별회원은 외국인 혹은 베트남에 거주하지 않는 한인 가운데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회원에게는 회원증을 발행한다(사진부착, 여권번호, 거주지 주소 및 연락처 포함)

제 6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각종 선거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임시총회 소집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2. 회원은 본회가 주최 및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적으로 참석하고, 제공하는 정보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회원은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상기 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석할 의무와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의무 및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 3 장 조직

제 7 조 (회장)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임원회의, 이사회, 총회의 의장이 되고, 각종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할 권한을 가진다.
2. 회장은 임원과 이사를 임명하며, 각 조직에 대한 지휘 감독의 책임을 가진다.
3. 회장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한다.
4. 회장은 주호치민 총영사관 관할 구역 내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한 자로, 대한민국 법률과 베트남 법률에 따라 범죄사실증명원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5. 회장의 선출에 대한 사항은 호치민 한인회 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6. 회장의 임기 중 불가피한 사유로 회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인 회장 또는 수석 부회장은 그 사유 발생 즉시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보고 받은 이사회는 당사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를 확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거관리 규정에 따라 후임자 선출을 위한 선거일을 정하고, 동 선거에서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신임 회장의 선출 없이 수석 부회장이 전임자의 잔여 임기 동안 회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고, 수석 부회장 또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결정한 자가 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7. 전염병 등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회장 선거 지연시에는 현회장이 신임 회장

선출시까지 회장직을 유지한다.

제 8 조 (임원)

1. 임원은 회원 중에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2. 회장은 임원으로 수석부회장, 부회장, 본부장, 사무총장, 팀장 및 국장을 둘 수 있다.
3. 임원의 조직과 구성은 회장의 재량에 따른다.
4. 임원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5. 회장은 임원단과 별도로 2인 이내의 감사를 선임할 수 있다.
6.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총 20인 이내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제 9 조 (산하단체 및 협력단체)

1. 본회는 각 역할별 운영위원회, 지역별 지부, 지회, 산하단체 및 협력단체를 둘 수 있다.
2. 회장은 운영위원회, 지역별 지부, 지회 및 산하단체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제 10 조 (사무국)

1.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회장은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관리의 책임이 있으며, 업무의 일부를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3. 사무국에서는 회장 및 임원의 활동을 보좌하고, 각종 사무에 대한 근거를 작성해서 회장 및 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회의

제 11 조 (총회의 역할 및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구로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본회의 운영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한다.

1. 당해 년도 사업실적 및 예산의 집행결과 보고
2. 차기 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 사항의 결정
3. 운영위원회, 지부, 지회 및 산하조직의 활동과 보고
4. 본회의 임직원에 대한 변경사항 보고
5. 정관(회칙) 및 선거 관리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감사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의결
7. 회장의 해임
8. 본회의 운영에 관한 의견 수렴
9. 기타 본회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여 의장이 제출한 안건의 검토 또는 의결

제 12 조 (총회의 종류 및 소집)

1.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은 회장이 하는 것으로 한다. 회장이 불출석, 부재 등의 사유로 회의를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수석 부회장, 부회장(연령순)의 순서로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한다. 회의의 진행은 임원 중 선임된 자가 할 수 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회장 또는 회장을 대신하여 총회를 주재할 권한을 가지는 자가 이를 소집한다
 -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나. 이사회가 총회의 소집을 의결한 때
 - 다. 회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얻어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회장에게 제출하여 총회 소집을 요청할 때
 - 라. 위 각호에 따른 임시총회의 소집이 필요한 경우 회장은 이러한 요청을 본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고, 소식지 등 제반 방법을 통해 즉시 알려야 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마. 의결이나 “회원”的 요청이 있음에도 회장이 이를 알리지 않고 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총회 소집을 요구한 “회원” 중 1인이 회장을 대신하여 임시 총회의 소집 요구를 알리고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의 의장은 회의 개최일 30일 이내에 총회에서 다룰 사안과 총회의 일시, 장소 등을 한인회의 소식지 및 한인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회원들의 e-mail 기타 온라인(SNS)를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13 조 (총회의 성립 및 의결 정족수 등)

1. 총회의 성립은 등록된 “회원” 100인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의결이 필요하거나 선거의 경우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 회장의 해임의 건은 출석한 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임장은 의결권을 포함하며,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4 조 (이사회 구성 및 역할과 기능)

이사회는 총회의 권한사항을 제외한 본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심의기구이다.

1. 이사회의 구성원은 본회의 회장 및 당연직 이사인 임원진, 본회의 정회원인 이사를 포함한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이사회의 의장은 본회의 회장이 겸임한다. 회장이 불출석, 부재 등의 사유로 회의를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수석 부회장, 부회장(연령순)의 순서로 회의의 의장이 되는 것으로 한다.
3.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역할을 한다.
 - 가. 한인 회비 결정에 대한 심의
 - 나. 사업보고 및 결산에 대한 심의
 - 다.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심의
 - 라. 이사회가 총회에 부의 및 위임할 사항의 결정
 - 마. 정관(회칙) 개정안에 대한 심의 및 선거 관리 규정을 제외한 본회의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한 심의
 - 바. 기타 총회 의결 사항을 제외한 본회의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 15 조 (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된다.

4. 정기이사회는 매 3개월에 1회 의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사회 의장이 특별한 사안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
5. 임시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6. 이사회는 불가항력 상황의 경우, 비대면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7. 이사회는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1/3 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 출석한 출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의결한다.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6 조 (임원회의의 구성)

임원은 제8조에 따른 회장, 부회장, 본부장, 사무총장, 팀장, 국장 등으로 구성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 17 조 (임원회의의 직무)

운영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선거관리 위원의 추천 및 해임

2. 회장의 보궐 선거
3. 한인회 특별 위원회 구성
4. 한인회 주요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
5. 한인회 분기별 재정 및 업무 심의

제 18 조 (정기회의, 임시회의)

1. 정기 임원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한다.
2. 임시 임원회의는 의장 또는 임원 1/3 이상의 요구에 따라 개최한다.
3. 임원회의는 의장이 소집하며 임원 및 감사에 대하여 회의 1주 전에 통지하여야 하며, 이는 e-mail 기타 온라인(SNS)를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4. 임원회의는 불가항력 상황의 경우 비대면 형태로 진행할 수 있다.

제 19 조 (임원회의 의결 정족수)

1. 임원회의는 본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2.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 출석한 것으로 본다.
3. 임원의 징계 및 주요 재산의 처분에 대하여는 재적 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에 부의한다.

제 5 장 재정

제 20 조 (수입)

본회는 다음을 수입으로 한다.

1. 회비
2. 기부금 및 찬조금
3. 사업수익금
4. 기타의 수익금

제 21 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2 조 (결산보고)

회장은 회계연도 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감사의 의견을 듣한 후, 감사의견을 첨부한 결산보고서를 회계년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회계연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회계연도 결산 보고서를 심의하고, 심의된 보고서가 한인회 소식지 및 한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23 조 (자산의 명의)

본회의 모든 자산은 한인회 명의로 한다.

제 24 조 (부채에 대한 책임 및 자산의 인수)

1. 신임회장은 취임 시, 전임회장 퇴임 시점에 결산한 본회의 모든 자산 (금전 및 물적 자산)을 인수한다.
2. 전임회장은 재임기간 동안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및 발생한 부채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 6 장 부칙

제 25 조 (징계)

1. 징계의 사유

본회의 회원이 다음 각 항에서 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에 근거하여 제24조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

- 가. 본 정관 제9조(금지행위)에서 정하고 있는 본회의 회원에게 허용되지 않는 행위
- 나. 본 정관 제8조(의무)에서 규정된 의무를 고의적으로 수행하지 않은 행위
- 다. 본회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징계의 종류

가. 본회의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다음과 징계 처분을 대상자에게 행할 수 있다.

서면 경고 또는 형사 고발, 고소

회원 자격의 정지

제명

나. 전항에 따른 회원 자격의 정지는 1개월에서 12개월 사이의 기간을 정하여 행할 수 있다.

다. 본 조에 따른 제명 처분을 받은 회원은 제명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본회에 재 가입할 수 없다. 본회의 회장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영구제명을 할 수 있다.

3. 징계의 절차

회장은 본회의 회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지하는 경우 그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한 서면을 이를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이사회에 제출하여 적정한 징계 처분의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가. 이러한 요청을 받은 경우 이사회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5인의

이사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징계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이사회에 제출하고 이에 따라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의 유무 및 종류에 대한 의결을 이사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

- 나. 전항에 따른 회장의 징계 처분에 불복하는 회원은 징계 처분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의 요청을 받은 회장은 전체 이사회에 재심 요청의 당부에 대한 판단을 7일 이내에 이사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청을 받은 이사회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재심의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재심 과정에서 이사회는 해당 회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다. 회장은 징계의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르게 할 수 있다.

제 26 조 (포상)

1. 회장은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달성을 이바지하거나 한인사회 및 주재국 현지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하여 포상을 수 있다.
2. 회장은 포상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이에 따르게 할 수 있다.

제 27 조 (서류의 관리)

1. 회장은 정관, 규정, 자산 목록, 각 종의 계약서, 총회의사록, 이사회회의록, 운영위원회 회의록 등을 사무국에 보관 비치하게 하여야 한다.
2. 회장은 회원이 전항의 서류의 열람을 요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 28 조 (정관의 효력)

1. 본 정관은 이사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결의하는 즉시 효력을 가진다.
2. 본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규정을 정하도록 한다.